퇴직금등청구의소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30. 2017나63261]



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】원고 1 외 6인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최잎새) 【피고, 항소인】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민영 외 2인) 【제1심판결】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17. 선고 2015가단5305682 판결 【변론종결】2018. 9. 20.

【주문】

]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'이 법원 인용금액'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'지연이자 기산일'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8. 10. 30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- 2.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.
- 3. 소송총비용 중 30%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'청구금액'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'지연이자 기산일'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'청구금액'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'지연이자 기산일'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'청구금액'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'지연이자 기산일'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'청구금액'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'지연이자 기산일'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[이유]

- 11.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
-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-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- 『한편,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부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겸직하며 아래 표 기재(그 중 음영처리 표시 기간 부분은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같은 기간 피고 회사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50%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임)와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각 소득을 얻었다.

- 순번원고근무기간겸직연도다른 근무처다른 근무처 소득피고 회사 소득112004. 9. 1. ~ 2013. 7. 30.2004년삼성카드(주)27,323,000원34,502,124원2007년저스트포유(주)683,069원44,071,764원2009년혜만(개인사업자)8,499,000원29,530,747원2011년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1,636,124원73,019,035원2012년㈜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2,384,590원52,823,446원2012년삼성카드㈜1,983,000원2013년㈜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13,386,490원29,908,150원2013년에스엠신용정보㈜9,142,749원222008. 10. 13. ~ 2014. 7. 30.2008년라이프케어36,679,123원16,198,082원2013년㈜고려신용정보9,734,610원32,866,251원(10~12월 합계 6,583,643원)한빛대부(2013. 10. 4.부터)7,728,029원2014년한빛대부77,308,756원10,832,565원332009. 9. 16. ~ 2015. 1. 31.2009년㈜미래신용정보16,769,403원2,216,969원2013년한빛대부(2013. 12. 1.부터)1,670,869원31,007,159원(12월 4,565,056원)2014년한빛대부26,739,879원8,189,618원442012. 1. 16. ~ 2015. 5. 30.2014년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㈜169,110원42,887,314원(11, 12월 합계 5,620,298원)한빛대부(2014. 11. 3.부터)5,781,143원2015년한빛대부48,359,816원20,072,698원552009. 7. 15. ~ 2013. 12. 30.2013년㈜다니엘워커11,126,594원15,945,417원662010. 1. 26. ~ 2014. 9. 13.2010년㈜다산인베스트321,770원33,636,894원2012년㈜비케이자산관리대부22,573,664원26,168,304원2013년㈜비케이자산관리대부27,867,330원14,890,510원2014년경㈜비케이자산관리대부71,011,645원59,021,120원㈜다산인베스트15,500,000원한빛대부(2013. 11. 1.부터)20,562,510원772007. 8. 1. ~ 2013. 12. 30.2007년㈜중앙신용정보11,629,226원13,818,219원2013년㈜매드민6,178,027원11,032,037원
- 제1심판결 제5면 밑에서 셋째 줄을 "

[이유]

- 11.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
-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-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- 『한편,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부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겸직하며 아래 표 기재(그 중 음영처리 표시 기간부분은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같은 기간 피고 회사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50%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임)와 같은 각 소득을 얻었다.
- 순번원고근무기간겸직연도다른 근무처다른 근무처 소득피고 회사 소득112004. 9. 1. ~ 2013. 7. 30.2004년삼성카드(주)27,323,000원34,502,124원2007년저스트포유(주)683,069원44,071,764원2009년혜만(개인사업자)8,499,000원29,530,747원2011년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1,636,124원73,019,035원2012년㈜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2,384,590원52,823,446원2012년삼성카드㈜1,983,000원2013년㈜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13,386,490원29,908,150원2013년에스엠신용정보㈜9,142,749원222008. 10. 13. ~ 2014. 7. 30.2008년라이프케어36,679,123원16,198,082원2013년㈜고려신용정보9,734,610원32,866,251원(10~12월 합계 6,583,643원)한빛대부(2013. 10. 4.부터)7,728,029원2014년한빛대부77,308,756원10,832,565원332009. 9. 16. ~ 2015. 1. 31.2009년㈜미래신용정보16,769,403원2,216,969원2013년한빛대부(2013. 12. 1.부터)1,670,869원31,007,159원(12월 4,565,056원)2014년한빛대부26,739,879원8,189,618원442012. 1. 16. ~ 2015. 5. 30.2014년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㈜169,110원42,887,314원(11, 12월 합계 5,620,298원)한빛대부(2014. 11. 3.부터)5,781,143원2015년한빛대부48,359,816원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20,072,698원552009. 7. 15. ~ 2013. 12. 30.2013년㈜다니엘워커11,126,594원15,945,417원662010. 1. 26. ~ 2014. 9. 13.2010년㈜다산인베스트321,770원33,636,894원2012년㈜비케이자산관리대부22,573,664원26,168,304원2013년㈜ 비케이자산관리대부27,867,330원14,890,510원2014년경㈜비케이자산관리대부71,011,645원59,021,120원㈜다산인 베스트15,500,000원한빛대부(2013. 11. 1.부터)20,562,510원772007. 8. 1. ~ 2013. 12. 30.2007년㈜중앙신용정보 11,629,226원13,818,219원2013년㈜애드민6,178,027원11,032,037원

○ 제1심판결 제5면 밑에서 셋째 줄을 "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